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514
----------	-------

발의연월일 : 2025. 11. 24.

발 의 자 : 송석준·박덕흠·곽규택
문정복·성일종·신동욱
김미애·이헌승·신성범
조경태·안철수·고동진
유상범·조배숙 의원
(14인)

제안이유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에서는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을 모토로 하고 있음에도, 현재와 같이 변호사시험에 의해 법학 교육이 완전히 왜곡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법의 이념과 가치에 대한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방법으로 학점이수제(일정한 범위의 과목 중 학생이 선택하는 과목을 일정 학점 범위에서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등의 방안이 제시되고 있음.

현행법 제2조가 제시한 교육이념, 즉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유·평등·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기초법학 과목(법철학, 법사학, 법사회학 등)을 필수교과목으로 개설하도록 함으로

써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개선하고자 함.

이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기초 법학 과목 및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 학점이수제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20조).

주요내용

- 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에 기초법학 과목을 필수교과목으로 포함 되도록 함(안 제20조제2항).
- 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기초법학 과목의 필수교과목 개설을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정하고 경과규정을 둠(안 부칙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회정의와 인권,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등 법의 이념과 가치에 관한 기초법학 교과목은 필수교과목으로 개설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수학점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과정은 이 법을 시행한 해의 다음 학년도에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수학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학전문대학원에 재적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교육과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교육과정) ① (생 략)	제20조(교육과정) ① (현행과 같 음)
②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설하여 야 하는 교과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단서 신설>	② ----- ----- ----- --. <u>다만, 사회정의와 인권, 법 치주의와 민주주의 등 법의 이 념과 가치에 관한 기초법학 교 과목은 필수교과목으로 개설하 여야 한다.</u>